

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해외건설협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‘해건협’)와 한국정책금융공사(이하 ‘정금공’, 해건협과 함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지원 등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내용)

양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해 정기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력사항을 발굴 및 모니터링 한다.

① 해외시장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관련 정보 교류 협력

- 해건협 회원사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정보 교류 협력
- 유망 프로젝트 발굴 혹은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관련 정보 교류 협력
- 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지원 활동시 양 기관의 공동 참여 및 정보망 공동이용 등 교류 협력

②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관련 상호협력

- 해건협 회원사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협력
- 정금공의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시 해건협의 해외건설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사업성 평가 분석 의뢰 등을 통한 협력
-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협력

③ 기타 상호 협력사항

- 양 기관 업무연수 과정에 상호 소속직원 참여 협력
- 양 기관은 상기 협력사항 외에 양 기관간 수시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

제3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. 단, 관계법령이나 법원 혹은 감독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 (비용부담)

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 (협의 책임자)

본 협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에 업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 (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기한)

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1년씩 연장된다.

제8조 (기타)

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2년 7월 11일

최재덕

해 외 건 설 협 회
회 장 최 재 덕



최재덕

진영욱

한 국 정 책 금 융 공 사
사 장 진 영 욱

